액제형 철분제제(품명: 헤모큐액 등) 급여기준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,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.

가. 일반적인 철결핍성 빈혈에는 혈액검사결과 다음에 해당되고 타 경구 철분제제 투여 시 위장장애가 있는 경우에

-아 래-

rate) 15% 미만인 경우 2) 만성신부전증 환자Serum ferritin 100ng/๗ 미만 또는 Transferrin saturation rate 20% 미만인 경우 나. 임신으로 인한 철결핍성 빈혈혈액검사결과 Hb 10g/dℓ 이하이고 타 경구 철분제제 투여 시 위장장애가 있는

1) 일반 환자 혈청페리틴(Serum ferritin) 12ng/๗ 미만 또는 트란스페린산호포화도(Transferrin saturation

- 경우에 급여하며, 투여기간은 4~6개월로 함. 다. 급성출혈 등으로 인한 산후 빈혈혈액검사결과 Hb 10g/dℓ 이하인 경우에 급여하며, 투여기간은 4주로 함. * 시행일: 2013.9.1.
- * 종전고시: 고시 제2005-57호(2005.9.1.) * 변경사유: 용어정비
- 라. 8세 미만의 소아는 철결핍성 빈혈이 확인된 경우 1차로 투여 시에도 요양급여하며, 미숙아의 경우는 예방 투여 시에도 인정함.
- 철분주사제(품명: 부루탈주 등)의 급여기준

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한 경우로서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매월 혈액검사 결과지, 철결 핍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결과지, 투여소견서가 첨부된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,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

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.

곤란한 경우만 인정)

* 시행일: 2013.9.1.

* 변경사유: 용어정비

주사제 청구

환자가 부담토록 함.

야함.

야 함.

* 종전고시: 고시 제2013-34호(2013.3.1.)

급여하며, 투여기간은 통상 4~6개월 급여함.

-아 래-가) 일반 환자혜모글로빈(Hb) 8g/dl이하이고 경구투여가 곤란한 경우로서 출혈 등이 있어 철분을 반드시 신속하 게 투여할 필요성이 있는 철결핍성 빈혈환자로 혈청 페리틴(Serum ferritin) 12ng/ml 미만 또는 트란스페린

나) 투석중이 아닌 만성신부전증 환자Hb 10g/dl 이하인 경우에 투여하고, 목표(유지) 수치는 Hb 11g/dL까지 요양

급여를 인정하며, Serum ferritin 100ng/떼 미만 또는 Transferrin saturation 20% 미만인 경우(다만, 경구투여가

1) Serum ferritin 100ng/๗ 미만 또는 Transferrin saturation 20% 미만인 경우(다만, 복막투석환자는 경구투

a) 경구투여가 곤란한 환자로 Serum ferritin 100ng/ml 미만 또는 Transferrin saturation 20%미만인 경우 b) 충분한 양의 Erythropoietin주사제를 투여함에도 빈혈이 개선되지 않는 Erythropoietin주사제 저항인

포화도(Transferrin saturation) 15%미만인 경우(인페드주의 경우 투여용량은 8㎖ 이내)

다) 투석중인 만성신부전증 환자Hb 11g/dl 이하인 경우에 투여 시 인정하며,

여가 곤란한 경우만 인정) 2) 충분한 양의 Erythropoietin주사제를 투여함에도 빈혈이 개선되지 않는 Erythropoietin주사제 저항인 경우

에는 Serum ferritin 300ng/ml 미만 또는 Transferrin saturation30%미만인 경우

라) 항암화학요법을 받고 있는 비골수성 악성종양을 가진 환자 Hb 10g/dl 이하인 경우로서

심사참고(메모)

• 액상제인 경우 위장장애 (구역, 구토, 변비, 설사 등의 위장증상, 경구제 복용 불가능이유 기입)

경우에는 Serum ferritin 300ng/๗ 미만 또는 Transferrin saturation 30%미만인 경우

• 경구제, 액상제 인 경우 Ferritin, Transferrin saturation rate(=Fe/TIBC x 100) 기입

• 산모인경우, 산후빈혈인경우 Hb 기입(또는 Ferritin, Transferrin saturation rate기입)

주사제인경우 Hb 또는 Ferritin, Transferrin saturation rate 기입

체중 60 kg 기준 Hb:8.0은 이틀간격 2개씩 5번 투여 합니다

• 베노훼럼(베노스틴,페로빈등) 2앰플+ Nomal saline100ml + 수액제주입로를통한주사(KK054)(13.98점) • TIBC=UIBC+serum Fetransferrin saturation rate=Fe/TIBC x 100

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,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

-아 래-

2) Hb 11g/dL 또는 Hct 33%까지 요양급여를 인정하며, 진료비 청구 시 매월별 혈액검사 결과치를 첨부하여

1) 헤모글로불린(Hb) 10g/dL 이하 또는 헤마토크리트(Hct) 30% 이하인 경우(투석을 받고 있지 않는 환자는

Erythropoietin 주사제 (품명: 에포카인주 등)

1) Hb 10g/dL 이하 또는 Hct 30% 이하인 경우 2) Hb 12g/dL 또는 Hct 36%까지 요양급여를 인정하며, 진료비 청구 시 매월별 혈액검사 결과치를 첨부하여

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.

IPSS risk category low 또는 Intermediate-1 환자

* 종전고시: 고시 제2010-80호(2010.10.1.)

가. 만성신부전 환자의 빈혈치료(철결핍성 빈혈로 진단된 환자는 제외함)

사구체여과율(GFR) 30mL/min/1.73㎡ 미만인 환자에 한함)

나. 항암화학요법(Chemotherapy)을 받고 있는 성인 비골수성 악성종양 환자의 빈혈치료

-아 래-가. 헤모글로불린(Hb) 10g/dL 이하 또는 헤마토크리트(Hct) 30% 이하이면서 Erythropoietin 500mU/ml 이하인

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골수이형성증후군 환자에게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, 동

함. 8주 투여 후 매 2주마다 반응평가를 하여 감량하는 등 용량을 조절해야 함 다. ※ IPSS: NCCN practice guidelines에 의한 International Prognostic Scoring System risk category 분류 * 시행일: 2013.9.1.

1. 빈혈증상 의심될때, CBC시행하고 빈혈소견이 보여 Fe, Ferritin, TIBC, Reticulocyste, PB morpholgy 검사

2. 빈혈증상 의심될때, 환자가 피 여러번 뽑기 싫다고 한번에 해달라고 할때(즉 CBC 결과가 없을때) CBC, Fe,

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에 의하면, 요양급여는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, 부상, 출산 등에 대하여 진찰ů검사, 약제ů치료재료의 지급, 처치ů수술 및 그 밖의 치료 등을 실시하는 것이며 요양급여의 방법ů절차ů범위ů상한 등의

각종 검사를 포함한 진단 및 치료행위는 진료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야 하며 연구의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. 따라서, 고객님께서 말씀하신 내역만으로는 급여ů비급여 여부를

건강보험 급여체계는 '행위별 수가'체계로서 모든 의료행위, 치료재료는 급여/비급여로 구분하여 법령 및 복지부 장관 고시로 정하고 있으며, 비급여대상을 제외한 일체의 사항을 요양급여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는 바, 규정된

3) HB :10 미만이거나 혈청 페리틴(Serum ferritin) 12ng/₪ 미만 또는 트란스페린 포화도(Transferrin satura-

4) 혈청 페리틴(Serum ferritin) 12ng/๗ 미만 또는 트란스페린 포화도(Transferrin saturation) 15%미만인 경우

나. Hb 12g/dL 또는Hct 36%까지 요양급여를 인정하며, 진료비 청구 시 매월별 혈액검사 결과치를 첨부하여야

Ferritin, TIBC, Reticulocyste, PB morpholgy 검사 시행할때....다 비급여인가요...?

Q. 환자가 빈혈증상이 있어서 검사할때...

* 변경사유: 용어정비

-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. 또한,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[별표1]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(제5조 제1항 관련) 2조 가. 진찰ů검사, 처치ů수술 기타의 치료에 의하면,
- 확인하기 곤란함을 알려드리니 이점 이해있으시기 바라며, 진료담당의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진료상 필요하여 실시한 검사는 요양급여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타당성 여부는 사례별로 심사됨을 알려드립니다. 다만, 현행

시행할때....다 급여인가요...? 아니면 이중에 비급여 항목이 있나요...?

- 비급여대상이 아님에도 상기 급여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임의로 비급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
- Q. 일반환자 경구용 철분제 처방의 보험기준이 어떻게 되나요?(임산부.산후츨혈이 아닌경우)
- 1) Hb:10 미만인경우 2) HB:10 미만이고 혈청 페리틴(Serum ferritin) 12ng/₪ 미만 또는 트란스페린 포화도(Transferrin saturation)
 - 4

15%미만인 경우

tion) 15%미만인 경우